

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정부 예비분 공급 방안

1. 입찰 참가자격 : 배출권 부족기업 [한국거래소 회원자격 필요]

□ 배출권 부족기업 기준 \Rightarrow {17년 할당량(사전할당+추가할당-할당취소) + 이월 받은 양 - 전년도 既차입량} - '17년 배출량

2. 입찰일시 : 2018. 6. 1(금) 10:00~12:00

3. 공급예정물량 : 총 550만톤

4. 입찰방법 : KRX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(K-ETS) 내 Bulletin Board(시장안정화윙)를 통해 입찰가격 및 물량 제출

① 최저입찰가격 : 3개월, 1개월, 3거래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 (호가단위조정)

※ 최저입찰가격은 시장안정화 예비분 입찰일에 K-ETS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고

* 최저입찰가격 산출식 (거래소 최근원물 KAU 가격 기준)

$\Rightarrow [(3개월\ 평균가격 + 1개월\ 평균가격 + 3거래일\ 평균가격) \div 3]$ (호가단위 50원)

② 최고입찰가격 : 입찰일 기준 배출권시장 지표배출권의 상한가*

* 기준가격(전일종가) x 110% : 입찰 과열에 따른 가격급등 억제 및 유통시장과의 가격괴리 방지

※ 최고입찰가격은 시장안정화 예비분 입찰일에 K-ETS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고

③ 최대입찰물량 : 배출권 부족물량의 20%

* (예시) 배출권 부족물량이 100톤인 기업은 최대 20톤(100x20%)까지만 입찰 가능

④ 낙찰기업 및 낙찰가격 결정 : [5. 낙찰결정방법] 참조

⑤ 최종낙찰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3개 공적금융기관(한국산업·중소기업·한국수출입은행)을 통해 협의매매 방식으로 낙찰기업과 거래체결

* 최종낙찰 후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 기업은 향후 정부 예비분 공급시 1회 배제

5. 낙찰결정방법 : 높은 가격순으로 공급예정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기업을 결정하고, 낙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기업 중 마지막 낙찰기업이 제시한 가격으로 일괄 결정

① 업체별(최대입찰물량 이내) 응찰물량의 총합이 공급물량에 도달하는 가격선에서 낙찰가격을 결정

※ (예시) [공급예정물량(30만톤), 최저(20,000원) ~ 최고(22,000원) 입찰가격]일때,
5개 기업(최대입찰한도 이내)이 입찰을 참가한 경우,
○ [입찰결과] A(10만톤, 22,000원), B(8만톤, 21,000원), C(12만톤, 20,500원)
D(7만톤, 20,200원), E(10만톤, 20,000원)으로 집계시
⇒ [낙찰결과] A, B, C 기업 낙찰 (낙찰가격은 C가 제시한 20,500원)

② 공급물량에 도달하는 낙찰가격선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 해당 업체별 입찰물량을 기준으로 공급잔여물량을 안분배분함

※ (예시) [공급예정물량(30만톤), 최저(20,000원) ~ 최고(22,000원) 입찰가격]일때,
5개 기업(최대입찰한도 이내)이 입찰을 참가한 경우,
○ [입찰결과] A(10만톤, 22,000원), B(8만톤, 21,000원), C(8만톤, 20,500원)
D (2만톤, 20,200원), E (6만톤, 20,200원)으로 집계시
⇒ [낙찰결과] A, B, C, D, E 기업 낙찰 (낙찰가격은 D, E가 제시한 20,200원)
* D와 E 기업은 잔여물량 4만톤을 안분배분함 [D : 1만톤(2/8), E : 3만톤(6/8)]

③ 업체별(최대입찰한도 이내) 낙찰물량 배분 이후 공급잔여물량 발생시 낙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

④ 최저입찰가격 미만 또는 최고입찰가격 초과 응찰은 무효처리